

# 성공예감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당신에게 뜻하지 않은 장애물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장의 화재 및 상해, 배상책임과 같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밝은 보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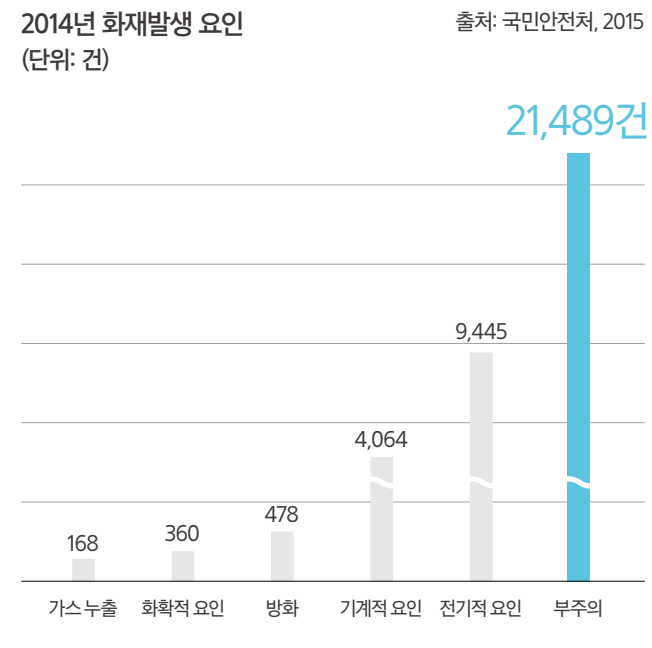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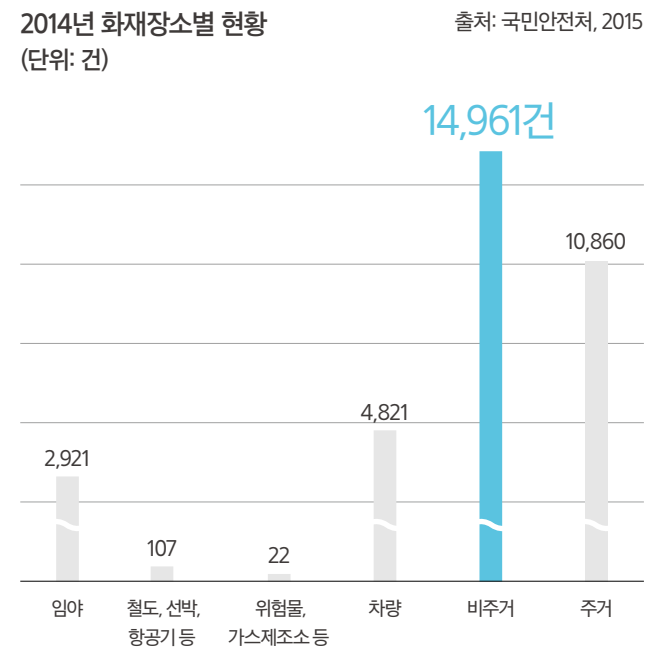


# 화재 발생장소 1위는 비주거시설, 화재 발생원인 1위는 부주의! 내 집만큼 소중한 사업장, 화재사고에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종업원부터 손님까지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사업장!  
만일 화재라도 발생한다면 인명피해와 재산손해는 고스란히 사업주의 책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위험으로부터 사업장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업장 안전부터 지켜야 사업도 '성공예감'입니다.

비주거시설  
화재건수 **14,961건**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건수 **21,489건**



## 뜻하지 않게 발생하는 사업장 화재! 화재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2014년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액은 총 4,054억원, 화재발생 장소 1위는 4,961건(35.5%)으로 비주거시설, 화재원인으로는 부주의가 21,489건(51.0%)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사업장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마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 ‘성공예감’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인한 배상책임과 화재벌금을  
발빠르고 합리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만기환급금은 다양한 목적자금으로 활용가능한 삼성화재의 재물보험입니다.



### 배상책임과 화재벌금도 보장하니 성공예감

삼성화재 ‘성공예감’은 사업장 안전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배상책임과 화재벌금을 보장해 드립니다.  
※ 해당 특별약관 가입시



### 위험보장과 목적자금 동시해결로 성공예감

삼성화재 ‘성공예감’을 통해 위험보장을 받으면서 만기환급금은 다양한 목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의무가입 보험도 문제 없으니 성공예감

삼성화재 ‘성공예감’은 다중이용업소 및 학원, 어린이놀이시설, 재난배상책임 의무가입업종 등 여러 업종의 의무보험을 보장해 드립니다.  
※ 해당 특별약관 가입시



## 왜, '성공예감' 보험이 필요하죠?

화재로 인한 재물손해와 상해, 배상책임, 벌금 등의 위험을 든든하게 보장해 드립니다.  
'성공예감'은 사업장에 최적화된 통합 보장·관리로 당신의 소중한 재산과 안전을 지켜드립니다.



### 위험보장 받으면서 목적자금 마련

사업장의 다양한 위험보장은 물론 만기 시 만기환급금을 수령하여 별도의 목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 더욱 큰 만족을 드립니다.



### 화재와 상해위험 통합보장

화재와 상해, 배상책임 등 업종특성에 따라 사업장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보장해드립니다. ※ 해당 특별약관 가입시



### 일반수탁물에 대한 보관자 배상책임 보장

사업장에서 영업 활동 중에 보관 중인 고객의 물품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발생하는 배상책임 손해항목 신설로 사업주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해당 특별약관 가입시 ※ 단, 분실 및 도난은 미보상

## 보험기간과 납입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보험기간	3년 / 5년 / 7년 / 10년	납입기간	3년납, 5년납, 전기납
납입주기	월납 / 3개월납 / 6개월납 / 연납		

## '성공예감'만의 할인혜택이 있나요?



### 당사 퇴직연금 계약자 할인

- 할인기준:**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하여 할인
  - 최초 가입시 성공예감 계약자가 당사 퇴직연금 계약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 계약자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단,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할인 가능)
- 대상 퇴직연금보험:** 무배당 애니비즈 슈퍼퇴직연금보험(확정급여형), 무배당 애니비즈 슈퍼퇴직연금보험(확정기여형) 단, 상기 퇴직연금의 상품명 변경시 변경된 상품을 따름
- 할인금액:** 성공예감 영업보험료의 1.0%

## 모든 사업장에 '재물보험'이 꼭 필요한가요?

화재와 안전사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사업장! 위험에 대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 없이 사업장에 화재나 재물손해, 상해, 배상책임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땐 이미 모든 것을 잃은 후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위험에 대한 대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다중이용업소 의무보험'에 대해 알고 싶어요



### 다중이용업소 의무보험 가입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법상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경우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합니다.(2013.2.23 시행)

다중이용업소 의무보험가입 대상업종

대상시설	22개 다중이용업소 업종: 휴게음식점(1층 제외), 제과점(1층 제외), 일반음식점(1층 제외),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감상실, 비디오 소극장, 학원, 목욕장,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화상대화방 및 전화방, 수면방, 콜라텍, 스크린골프장, 안마시술소, 실내사격장)
------	---

- ※ 주1) 해당업종별 세부조건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참조
- ※ 주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함

##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 과실에 따른 법률상 배상책임

화재로 옆 건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경미한 과실이라도 법률적 배상책임이 따르며 '성공예감'은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장해드립니다.

### 실화책임에 따른 막대한 벌금

법을 개정으로 실화의 경우 1,500만원 이하, 업무상 실화 및 중실화의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하며 '성공예감'은 벌금에 대한 보장을 대비해드립니다. ※ 해당 특별약관 가입시

### 직원 및 고객 부상에 따른 책임

화재로 발생하는 재물손해, 종업원 상해사고와 사업장을 찾은 고객의 경미한 부상 등 삼성화재 '성공예감'은 일반적인 안전사고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특별약관 가입시

### 의무보험 가입으로 법적의무 준수

의무적으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다중이용업소 책임보험과 재난배상책임 보험도 삼성화재 '성공예감' 하나면 걱정 없습니다.

<b>실화로 인한 벌금</b>	1,500만원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형법 제170조, 혹은 동법 제171조)
<b>실화책임 관련 법규</b>	· 벌금: 실화로 인해 형법 제170조, 혹은 동법 제171조에 따라 1,500만원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배상책임: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b>다중이용업소 관련 법규</b>	· 배상책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2, 제25조에 따라 법상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경우 화재(폭발 포함)로 인한 배상책임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특별한 부가서비스가 있나요?



### 법률세무상담서비스

사업 경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세무 관련 문제들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 전화 상담 서비스

- 삼성화재 서비스 전용 콜센터 1588-8787로 신청
- 전담 변호사 및 세무사가 직접 전화로 상담하는 법률세무 상담 (1회 10분, 년 10회)
- ※ 전화상담 서비스 가능 시간 09:00~12:00, 13:00~18:00(토.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제외)



#### 인터넷 상담 서비스

- 삼성화재 홈페이지(www.samsungfire.com) 내에서 이용
- 홈페이지 로그인 → 서비스존 → 법률세무상담서비스 → 서비스조회/신청 바로가기
- 전담 변호사 및 세무사가 직접 온라인 상담 (년 10회)
- 내용증명 작성 2회/년, 양도소득세 계산 1회/년

- ※ 법률·세무 상담 서비스 이용가능 기간: 보험개시일로부터 3년
- ※ 본 서비스는 보험계약이 정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 한해 이용 가능 합니다.
- ※ 서비스 혜택, 이용방법, 이용기간 등은 서비스 기간 중에도 당사 및 제휴사의 사정에 의해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 상기 제공 서비스는 이용기간 중에도 서비스 품질 향상 혹은 서비스 제공자의 제공 여건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으며, 변경 또는 중단 시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여 드립니다.

## 지급제한사항

1. 하나의 상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은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행정소송 법률비용손해, 임대차보증금법률비용손해, 화재벌금, 업무상과 실치사상 벌금비용 및 배상책임 관련 특별 약관등은 다수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3.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행정소송 법률비용손해, 임대차보증금 법률비용손해의 변호사비용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변호사비용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자기부담금 10만원 차감)을 지급하며, 보험금은 실제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변호사 보수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4. 상해담보는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5.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배상책임보험(공제계약 포함. 이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관련 의무보험으로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의무보험 대상인 경우 배상책임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입하신 의무보험 외의 배상책임담보에서 보상하지 않으며, 초과할 경우에는 의무보험에서 보상해야 하는 금액의 초과액 만을 보상합니다.

## 가입과 관련해 꼭 알아야 할 사항이 있나요?

청약할 때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 (청약사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무배당 보험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경우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 청약의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한도로 합니다)에 그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일 이내에 납입한 제1회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품질보증제도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1332 / 인터넷: www.fss.or.kr
- 사고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 관련 문의(삼성화재해상보험)  
전화: 1588-5114 / 인터넷: www.samsungfire.com

###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전화: 1588-5114 / 인터넷: www.samsungfire.com → 전자민원창구)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www.fss.or.kr

###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삼성화재의 브랜드 심볼인 '당신의 봄'은  
고객을 제대로, 꼼꼼히, 앞서 보겠다는  
'봄(Seeing)'의 자세와 세상의 불안함에 맞서  
보다 희망찬 고객의 '봄(Spring)'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상담 및 문의 대표전화 1588-5114

당신에게 좋은보험 삼성화재 